

##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제안설명서

### □ 제안이유

#### ○ 개정(안)

- 소방기관설치관한규정(대통령령제14478호, '94. 12. 31), 경상북도소장서설치 조례 제2309호('95. 3. 2) 제정 및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증개정 규칙 제2188호('95. 4. 11)의 공포시행으로 영주소방서 관할구역이 영주시 전역과 봉화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 이체(영주시→경상북도)승인에 대한 소방차량 운전원의 감축과
- 지방고용직(1종방법원)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정원감축요원 발생으로 관련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임.

#### ○ 수정(안)

- 주민의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「지방정무직」 정원승인(지방 12200-741, '95. 5. 12. 시행일 1995. 7. 1)과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(대통령령 제14647호, '95. 5. 16)에 따라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임.

※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제2조의 본문중 “본청” 다음에 “의회사무국”을 삽입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  1. 시 본청 : “405명”(변동은 없으나, 지방고용직 1종방법원 1명 감축과 지방 정무직 1명 증원임)
  2. 의회사무국 : “18명” 신설과 “제2호 내지 제4호”를 제3호 내지 제5조”로 변경하고,
  3. 읍면동 : “470”명을 “464명”으로 지방운전원 6명을 감축하며
- 부칙중 단서규정 신설 : “다만, 제2조 제1호 시본청 정원은 1995. 6. 30까지는 404명으로 한다”로 하며
- 그 결과 영주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,061→1,055명으로 6명이 감축됨.